

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4788
결재일자	2015.4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68호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조혜란	이정희	이윤영	김종순	04/13 이비오
협조				

# 2015년 자체 투자심사 실시 계획



**성 동 구**

**[기획예산과]**



# 2015년 자체 투자심사 실시 계획

2015년 자체투자 심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 I 투자심사 개요

### □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
-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

### □ 투자심사 대상사업

#### ○ 최초 심사

-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 신규 투자사업  
(단,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 원 이상인 사업과 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 심사 의뢰)
-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보조금이 포함된 신규 투자사업
-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연·축제 등 행사성 사업

#### ○ 재심사

-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
-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% 이상 늘어난 사업
- 투자심사 후 재원 간 조달계획 및 위치·구조가 변경된 경우

### □ 투자심사 시기

-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 단계(예산편성 전)까지 심사의뢰
-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

### □ 투자심사위원회 심사

- 일 시: 2015. 4. 13.(월)
  - 방 법: 서면심사
  - 심사위원: 총 12명
    - 당연직(3): 기획재정국장(부위원장), 행정관리국장, 주민생활국장
    - 위촉직(9): 주성수(위원장) 외 8명
- ※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

### □ 심사대상 사업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개요	사업비	주관부서						
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공공복합시설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치: 성수동1가 13-445 (성동구 성동구 아차산로 107)</li> <li>○ 기간: 2015. 2. ~ 2015. 12.</li> <li>○ 규모: 연면적 약 698.8㎡(지하1층/지상3층)</li> <li>○ 시설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지원센터</li> <li>- 융복합혁신센터 등</li> </ul> </li> </ul>	3,913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국비</td> <td>700</td> </tr> <tr> <td>시비</td> <td>1,300</td> </tr> <tr> <td>기금</td> <td>1,913</td> </tr> </table>	국비	700	시비	1,300	기금	1,913	지역경제과
국비	700								
시비	1,300								
기금	1,913								

## □ 심사기준 및 내용

### 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

- 사업에 대한 시민 수요
- 현재 공공서비스(시설물) 현황

### ②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관련계획과의 연계성

- 사업추진 근거법규, 사업추진 방침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
-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, 상위계획 또는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등

### ③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

- 동종 공공시설과의 비교 등 수요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
- 총 비용 및 단위 당 단가비교 등 사업비의 적정성

### ④ 재무적 · 경제적 수익성

-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
- 사업시행 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경향

### ⑤ 지역 간 균형 및 입지의 타당성

- 사업수혜 계층 및 수혜지역 등 지역 간 균형분석
- 주민의 접근성 여부 등 시설입지의 타당성

### ⑥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자원조달 가능성 등

-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등 정치적 가능성
-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·행정적 가능성
- 국비 및 시비 조달계획 등 자원조달 가능성
- 기타 사업 추진 제약요인

### ⑦ 종합적인 평가 · 분석

- 위 기초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 평가 결과 분석
- 상급기관의 승인취득, 영향평가 실시 등 사업시행 준비 사전절차 이행 여부
- 설계도서 작성,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 착수준비
-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 방향

## □ 심사결과 방식

-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를 ① 적정 ② 조건부추진 ③ 재검토 ④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결정
  - 적 정: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반영 등 자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
  - 조건부: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자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
  - 재검토: 사업의 규모, 시기, 자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  - 부적정: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

## □ 투자심사 결과 통보

- 통보기한: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부서 통보

## Ⅲ 행정사항

### □ 소요예산: 630천원

- 위원회 수당: 70,000원 × 9명(위촉직 위원)= 630,000원
  - 기획,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, 재정 및 예산 분석, 재정분석관리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(201-01)

### □ 서면 심사 참석 ----- 지역경제과

- 붙임 1. 성동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.  
2. 투자심사 의뢰서 1부. 끝.